

제2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9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1. 10.(금)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출의안

〈의안 목록〉	〈제출자〉
1.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



성주군의회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 일반직 : 663명(현행과 같음)

(1) 3급 : 0명⇒1명(증1)

(2) 4급 : 2명⇒1명(감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기획예산실-26098(2024.12.31.)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9	365	15	100	45	174
정무직 계	1	1	0	0	0	0
군 수	1	1				
일반직 계	663	358	15	71	45	174
3급	1	1				
4급	1			1		
4~5급	3	2				1
5급	33	17	2	2	3	9
6급상당 이하 소계	621	335	13	67	42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3		1		
별정직 계	1	1	0	0	0	0
7급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7	5	0	2	0	0
연구관	0					
연구사	7	5		2		
지도직 계	27	0	0	27	0	0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3]</p>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직급별 \ 기관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699</td> <td>365</td> <td>15</td> <td>100</td> <td>45</td> <td>174</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 군 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663</td> <td>358</td> <td>15</td> <td>71</td> <td>45</td> <td>174</td> </tr> <tr> <td> 4급</td> <td>2</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4~5급</td> <td>3</td> <td>2</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 5급</td> <td>33</td> <td>17</td> <td>2</td> <td>2</td> <td>3</td> <td>9</td> </tr> <tr> <td>6급상당이하소계</td> <td>621</td> <td>335</td> <td>13</td> <td>67</td> <td>42</td> <td>164</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4</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별정직 계</td> <td>1</td> <td>1</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7급상당이하소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직 계</td> <td>7</td> <td>5</td> <td>0</td> <td>2</td> <td>0</td> <td>0</td> </tr> <tr> <td> 연구관</td> <td>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7</td> <td>5</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 지도직 계</td> <td>27</td> <td>0</td> <td>0</td> <td>27</td> <td>0</td> <td>0</td> </tr> <tr> <td> 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 지도사</td> <td>24</td> <td></td> <td></td> <td>24</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9	365	15	100	45	174	정무직 계	1	1	0	0	0	0	군 수	1	1					일반직 계	663	358	15	71	45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7	2	2	3	9	6급상당이하소계	621	335	13	67	42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3		1			별정직 계	1	1	0	0	0	0	7급상당이하소계	1	1					연구직 계	7	5	0	2	0	0	연구관	0						연구사	7	5		2			지도직 계	27	0	0	27	0	0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p>[별표3]</p>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직급별 \ 기관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699</td> <td>365</td> <td>15</td> <td>100</td> <td>45</td> <td>174</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 군 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663</td> <td>358</td> <td>15</td> <td>71</td> <td>45</td> <td>174</td> </tr> <tr> <td> 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1</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4~5급</td> <td>3</td> <td>2</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 5급</td> <td>33</td> <td>17</td> <td>2</td> <td>2</td> <td>3</td> <td>9</td> </tr> <tr> <td>6급상당이하소계</td> <td>621</td> <td>335</td> <td>13</td> <td>67</td> <td>42</td> <td>164</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4</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별정직 계</td> <td>1</td> <td>1</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7급상당이하소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직 계</td> <td>7</td> <td>5</td> <td>0</td> <td>2</td> <td>0</td> <td>0</td> </tr> <tr> <td> 연구관</td> <td>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7</td> <td>5</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 지도직 계</td> <td>27</td> <td>0</td> <td>0</td> <td>27</td> <td>0</td> <td>0</td> </tr> <tr> <td> 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 지도사</td> <td>24</td> <td></td> <td></td> <td>24</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9	365	15	100	45	174	정무직 계	1	1	0	0	0	0	군 수	1	1					일반직 계	663	358	15	71	45	174	3급	1	1					4급	1			1			4~5급	3	2				1	5급	33	17	2	2	3	9	6급상당이하소계	621	335	13	67	42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3		1			별정직 계	1	1	0	0	0	0	7급상당이하소계	1	1					연구직 계	7	5	0	2	0	0	연구관	0						연구사	7	5		2			지도직 계	27	0	0	27	0	0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9	365	15	100	45	174																																																																																																																																																																																																																																																														
정무직 계	1	1	0	0	0	0																																																																																																																																																																																																																																																														
군 수	1	1																																																																																																																																																																																																																																																																		
일반직 계	663	358	15	71	45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7	2	2	3	9																																																																																																																																																																																																																																																														
6급상당이하소계	621	335	13	67	42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3		1																																																																																																																																																																																																																																																																
별정직 계	1	1	0	0	0	0																																																																																																																																																																																																																																																														
7급상당이하소계	1	1																																																																																																																																																																																																																																																																		
연구직 계	7	5	0	2	0	0																																																																																																																																																																																																																																																														
연구관	0																																																																																																																																																																																																																																																																			
연구사	7	5		2																																																																																																																																																																																																																																																																
지도직 계	27	0	0	27	0	0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9	365	15	100	45	174																																																																																																																																																																																																																																																														
정무직 계	1	1	0	0	0	0																																																																																																																																																																																																																																																														
군 수	1	1																																																																																																																																																																																																																																																																		
일반직 계	663	358	15	71	45	174																																																																																																																																																																																																																																																														
3급	1	1																																																																																																																																																																																																																																																																		
4급	1			1																																																																																																																																																																																																																																																																
4~5급	3	2				1																																																																																																																																																																																																																																																														
5급	33	17	2	2	3	9																																																																																																																																																																																																																																																														
6급상당이하소계	621	335	13	67	42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3		1																																																																																																																																																																																																																																																																
별정직 계	1	1	0	0	0	0																																																																																																																																																																																																																																																														
7급상당이하소계	1	1																																																																																																																																																																																																																																																																		
연구직 계	7	5	0	2	0	0																																																																																																																																																																																																																																																														
연구관	0																																																																																																																																																																																																																																																																			
연구사	7	5		2																																																																																																																																																																																																																																																																
지도직 계	27	0	0	27	0	0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삭제)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급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인건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총무새마을과 행정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1. 10.(금)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 일반직 : 663명(현행과 같음)

(1) 3급 : 0명⇒1명(증1)

(2) 4급 : 2명⇒1명(감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기획예산실-26098(2024.12.31.)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